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1. 1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김기현의원 등 103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12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1.1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2021.12.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2021.12.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기현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 자격을 25세로 규정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정치적 행위능력을 명백히 인정받아 선거권을 부여받은 일부 국민을 단지 연령을 이유로 입후보 자격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입법 재량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음.

이미 국외 주요 선진국들은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하여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장지원)

피선거권 연령의 하향 여부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하에서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 해당 공직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수준, 정치문화 및 선거풍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한다면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피선거권 연령 하향의 구체적인 수준에 맞추어 정당가입연령에 관한 「정당법」의 규정에 대한 일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청년, 청소년 후보자의 실질적인 피선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탁금의 하향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 요지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가입연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청소년의 출마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당법」 등의 개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해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